

# 현대트랜시스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HYUNDAI  
TRANSYS  
Compliance  
Check List



# 현대트랜시스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HYUNDAI TRANSYS Compliance Check List

## CHAPTER

# 1

## 불공정거래행위 체크리스트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지원 행위

# 거래거절

관련 부서  
전 부문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1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26Page)

## ● 유형

### • 공동의 거래거절

우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단독의 거래거절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자기의 제품과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지 않은가?

# 차별적 취급

관련 부서  
전 부문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2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27Page)

## ● 유형

### • 가격 차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소비자 포함)

### • 거래조건 차별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소비자 불포함)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 특정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가?
-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 계열회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은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관련 부서  
영업본부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3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29Page)

## ● 유형

### • 부당염매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부당고가매입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당해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았는가?
- 그러한 염가판매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퇴출당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는가?
- 염가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지 않은가?
- 경쟁 사업자나 신규 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는가?

# 부당고객유인

관련 부서  
영업본부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4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0Page)

## ● 유형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리베이트, 가격할인, 경품, 판촉지원금 등)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 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우리 회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에 의한 거래성립의 방해 및 거래 계속의 방해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 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지는 않았는가?
- 경쟁 사업자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이 실제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우리 회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지는 않았는가?
- 경쟁 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을 수주하고 있지 않은가?
-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우리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되도록 유도하지 않는가?
- 자신의 제품과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강제

관련 부서  
구매본부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5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2Page)

## ● 유형

### • 끼워팔기

우리 회사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소비자 포함)

### • 사원판매

우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없음)

### •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 제품에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다른 제품을 강제로 끼워 구입하도록 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인기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상호 연관성이 없는 품목을 패키지화하지는 않았는가?
-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았는가?
-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을 일정량씩 구입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는가?
- 우리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부서  
전 부문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6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3Page)

## ● 유형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거래상대방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상기 (1)~(3)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가?
-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부서  
구매본부 / 영업본부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7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6Page)

## ● 유형

### •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상대방이 우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소비자 불포함)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거래처가 계열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부서  
구매본부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8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7Page)

## ● 유형

### •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 거래처 이전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용

상기 유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장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경쟁사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거액의 보상 등을 제안하여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하여 경쟁사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는가?
- 우리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거래처로 옮기려는 업체에 대하여 담보 해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근거 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거래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
-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 부당지원 행위

관련 부서  
전 부문

## ● 법령 및 편람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9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39Page)

## ● 유형

### •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는가?
- 공장·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지는 않았는가?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 시 시장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거래하거나 현저히 높게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지는 않았는가?
-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 대상 기업을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지원 대상 기업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구조로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가?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지는 않았는가?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는 않았는가?

## CHAPTER

# 2

## 하도급거래 체크리스트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 검사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수령 거부 등
- 부당한 감액 금지
- 기타(탈법행위 등)
- 납품단가 연동제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관련 부서  
구매본부 / 연구소  
품질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3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89Page)

## ●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기미정, 납기미정) 등의 발주(주문)서를 발행하는가?
-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업체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 및 3년간(기술자료 관련 문서의 경우 7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 결정 후 일부만 발주하는 등의 물량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업체에게 귀책사유 없는 발주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업체의 생산 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하고 있는가?
- 하도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협력회사에게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한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 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업체 선정 검토 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추가발주 및 납기 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후 처리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는가?

# 검사 통보

관련 부서  
품질 / 자재  
생산 / 연구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9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99Page)

## ● 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추가 예시1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합격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 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위탁물의 검사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상 발견된 불량품의 처리는 생산부서에서 불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부서

구매본부 / 영업본부  
재경본부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13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115Page)

## ● 내용

-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물품 등의 검사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이 됨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은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지연하여 발행한 경우는 없는가?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대금 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업체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채무 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부서  
구매본부 / 연구소  
재경본부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4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94Page)

## ● 내용

-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i)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ii) 부당하게 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됨
- 통상대가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 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함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단가 결정 시 협력업체와 합의를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졌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가?
- 원도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단가결정 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는가?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지는 않은가?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가?

# 수령 거부 등

관련 부서  
연구소 / 자재 / 생산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8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101Page)

## ●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및 지연하여서는 안 됨
-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 예컨대, 발주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함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 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수령)하였는가?

# 부당한 감액 금지

관련 부서  
구매본부 / 영업본부  
연구소 / 품질 / 재경본부  
자재 / 생산

## ● 법령 및 편람

- 하도급법 제11조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106Page)

## ● 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도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았는가?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당초 계약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는가?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기타(탈법행위 등)

관련 부서  
전사

##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구매강제)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구매강제)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구매강제)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경영간섭)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경영간섭)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았는가?
- (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탈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기술자료 제공요구)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부당한 위탁취소)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부당한 위탁취소) 협력업체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보복조치) 협력업체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 (대금지급)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 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하지는 않았는가?
- (대물변제)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부서  
구매 / 재경 / 영업

## ● 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추가하지는 않았는가?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가 급등하여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보관하는가?
- 수급 사업자의 납품 단가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였는가?
-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실히 협의에 응하였는가?
-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 그 증액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였는가?
-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는가?
- 납품단가 조정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 관련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고 있는가?

CHAPTER

3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부서  
경영지원

## ●— 내용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국외이전/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개된 무선망 등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을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를 받는 방법은 적절한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가?
- 개인정보의 유출, 노출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CHAPTER

4

청탁금지  
체크리스트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관련 부서  
전 부문

## ● 내용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직자(공무원 등), 공무수행사인(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등)
  - 기타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 체크리스트(유의사항)

-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공직자 등 동일인에게 금품(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직자에게 허용가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공직자 등을 외부강사로 초빙 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를 차등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업무수행과 관련된/관련 없는 공직자 친구에게 사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공공기관의 회식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기자에게 기사 게시를 요청하며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인·허가 업무완료 후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 음식물 외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HYUNDAI **TRANSYS**

##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발행인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  
발행부서    현대트랜시스 법무팀  
발행일      2023년 10월

※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트랜시스(주)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 복제, 배포, 변형, 활용할 수 없습니다.